

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. 신고 지침

1. 노인 인권의 정의

-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
2. 노인 인권 보호 지침

-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-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-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3. 노인학대의 정의

-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, 정서적, 성적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,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,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.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서적,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
4. 노인학대의 유형

유형	정의
신체적 학대	-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- 노인을 폭행,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함 -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거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,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하는 행위 -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하는 행위
정서적 학대	-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-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- 노인을 위협,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-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행동
성적 학대	-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- 원치 않는 신체접촉,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교체,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, 음담패설로 혐오감 주기 등
경제적 학대	-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방임	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유기	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-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

5. 노인학대 예방 활동

- 유닛 내 관련 정보문 게시
- 입소자(연4회) 및 보호자(연2회)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존중교육 실시
- 노인 학대예방 위원회를 통한 예방활동

6. 노인학대 신고

-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신고(129 또는 1577-1389) 등 상시 접수하며 신고자는 입소자, 보호자, 직원 및 방문객으로 한다.